

1. 개정이유

농촌 빈집을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정비하기 위하여 빈집우선정비구역
역을 지정·관리하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
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
용 등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76호, 2024. 1. 2. 공포, 2
024. 7. 3. 시행)됨에 따라,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특례부여 대상 빈집을
구체화하고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특례 부여 대상 빈집 기준 구체화(안 제43조의5)
빈집은 장기간 방치되어 다양한 사유로 개축 용도변경 등이 어려운 상
황이 대부분이므로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사용승인, 공유토지 분할, 점
유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
어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
- 나. 특정빈집의 철거 등 비용 징수를 위한 비용납부명령서 신설(안 제43
조의7)
특정빈집의 직권 철거에 따른 소요 비용 징수 및 보상비와 소요비용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8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 다.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45조제4호)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새마

을금고중앙회’로 수정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사전검토 요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를 제43조의6으로 하고, 제4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5(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영 제59조의9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
3.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제4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7(비용납부명령서) 영 제6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서는 별지 제68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5조제4호 중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새마을금고중앙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3조의5(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영 제59조의9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 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 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 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 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 3.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제43조의5 (생략) <u><신 설></u> 제45조(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영 제65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 3. (생략)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5.·6. (생략)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제43조의6 (현행 제43조의5와 같음) 제43조의7(비용납부명령서) 영 제6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서는 별지 제68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5조(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새마을금고중앙회 5.·6. (현행과 같음)
---	--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 목 특정빈집 철거 등 소요 비용 납부 명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년 월 일(제 호)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	성 명						
	주 소						
납부금액	총 액		명세				
			1.	2.	3.	4.	5.
	금 원정 (₩)						

붙 임: 특정빈집 철거 등 소요 비용 세부 명세서 1부. 끝.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기관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 주소 / 공개 구분